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가단50638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피고1. A

2. B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홍섭

변론 종결2024. 9. 5.

판결 선고2024. 10. 24.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7,651,655원 및 그 중 37,572,249원에 대하여는 2023. 10. 31.부터 2024. 6. 11.까지는 연 8%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망 C과 피고 B 사이에 2023. 2.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망인이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18. 7. 13.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원금 17,000,000원, 보증기한 2023. 7. 13.로 된 신용보증서를,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22. 4. 29.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원금 44,000,000원, 보증기한 2027. 4. 29.로 된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하였고, 망인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23. 3. 2. 피고 B에게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2. 23.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23. 3.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소외 F이 있다.

라. 망인은 2023. 4. 14. 위 가.항 기재 대출금 원금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23. 10. 31. D은행에 394,111원을, E은행에 37,178,13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으며,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73,066원, 추가보증료 중 미수금은 6,340원이고,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다.

마. 피고 A는 2023. 5. 18.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피고 B, 소외 F은 같은 날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심판을 받았다(인천가정법원 부친지원 2023느단10308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 원리금 37,651,655원{= 잔존 대위변제원금 37,572,249원(= D은행 394,111원 + E은행 37,178,138원) + 채권보전비용 73,066원 + 추가보증료 6,340원) 및 그중 잔존 대위변제원금 37,572,249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23. 10. 31.부터 이 사건 2024. 5. 2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4. 6. 11.까지는 원고가 정한 약정이율인 연 8%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망인과 피고 B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참조).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23. 3. 22. 사망 전까지 D은행, E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지 않다가 사망한 이후인 2023. 4. 14. 대출금 채무를 처음 연체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망인이 위 각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위 각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게 된 것은 망인의 사망이라는 우연적 사정에 의하여 현실화 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재연

별지